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05~77
----------	---------

제출연월일	2005. 11. .
제출자	거창군수

<p>■ 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격감되어,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모성보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p>■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장려금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원 -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 임부 철분제 및 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부 또는 모)가 거창군에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임부철분제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읍,면)→지원 대상자 확인후 군 제출→지원 여부 결정후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군)
<p>■ 제정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구가 격감되어 거창군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장려금”이라 함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출생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원
2.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3. 임부 철분제 및 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둘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임부철분제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자료, 기타 행정자료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일이내에 해당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①임산부 (출생아) 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배우자 (보호자)성명	
④주소 (전화번호)					
⑤분만기관명			⑥분만일자		

⑦출산장려금 지급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주소

애기와의 관계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확인

200 년 월 일

거창군수(보건소장)귀하